

문서관리번호	HPK-A-018
최초 제정일	2008.01.02
최신 개정일	2024.05.02
문서 관리자	인사총무팀

희 성 촉 매 윤 리 규 범

< 전 문 >

희성촉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사람과 기술을 통하여 고객·구성원·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를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영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

회사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무조건의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 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②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 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②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 ①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해 지켜야 할 각종 법률을 이해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자유경쟁의 추구

-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한다.
- ②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②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거래 절차

-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②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2. 상호발전의 추구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3. 평등한 기회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4. 자금 세탁 금지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 고객, 파트너, 기관 및 개인의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지식 재산권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장 및 보호하고, 타사 또는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 윤리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희성촉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희성촉매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③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④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⑤ 금융, 품질, 인사, 경비 등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 시 정확하게 기록, 보안, 유지 및 보고해야 하며,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지 말아야 한다.

2. 사명의 완수

- 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③ 동료 및 관련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④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성희롱 금지

-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②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③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존중

-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고객 및 사내 정보유출 행위 금지

- ①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되며,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 또는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7. 회사 자산의 사용

- ①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②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한다.

8. 이해상충 회피

- 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 ②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 존중

- ① 회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창의성의 촉진
- ①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②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③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6장 지속가능성 추구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 합리적 사업 전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 2.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3. 사회발전에 기여
 - ①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③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 4. 환경의 보호
 - 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정보의 공개

- ①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 ②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이해관계자 참여

- ①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 7장 윤리규범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①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② 인사팀은 윤리규범에 대한 재직자 교육을 정기적(2년 1회)으로 실시하고, 영업 및 구매 등 거래처/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3년 1회)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③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입사자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자는 교육 후 [별첨1]의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를 주관부서(사무직은 인사팀, 기능직은 총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인사팀은 Hot Line(사이버신문고) 및 사내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필요 시 수시로 안내해야 한다.
- ⑤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 ⑥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팀장과 협의한다.
- ⑦ 회사에 입사 시 첨부 윤리규범 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제 8장 주관부서

회사는 윤리경영 정책 결정과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인사팀으로 정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케 한다.

- ①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 ②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③ 윤리경영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 운영
- ④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
- ⑤ 윤리경영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역할 수행
- ⑥ 기타 윤리경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장 기타사항

1. 관련양식

NO.	양식명	보존연한	결재경로	
			담당	승인
1	윤리규범 서약서	-	-	-

2. 시행일자

- ① 본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